

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(제24조제2항제1호 관련)

구 분	처 리 기 간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	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7일
	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: 14일
	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: 30일
2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	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7일
	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: 14일
	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: 21일
3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	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: 7일(3일)
	시·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(시·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): 30일(15일)
	그 밖의 건축물: 14일(7일)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(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·신고 등을 포함한다)	7일
5.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	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: 14일
	그 밖의 경우: 6일

비고

1.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()는 건축사가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.
2.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한다.